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안

1. 개정이유

○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원칙을 「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」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 지침을 폐 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
- 3.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안 붙임과 같음

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폐지예규안

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1245